

나라살림 리포트 2020-제34호

중앙정부 일반회계 기금 전입금 규모 및 편성 적정성 진단

요약

기금은 예산과 독립적인 수입구조가 기금 설립 및 존치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기금운용 주체는 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체수입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매년 여러 기금의 지출재원 충당을 위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통한 내부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매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기금에서 수행하는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부족한 재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함은 시기 및 상황에 따라 일정부분 필요할 수 있지만, 기금 재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이 높거나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기금 설치·운영의 목적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편성되고 있는 기금 중 사업성 기금을 중심으로 각 기금의 수입 및 지출구조와 경제 및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해당 전입금의 규모와 편성이 적정한지를 진단하였다.

진단 결과 법정부담금으로써 해당 전입금이 편성되는 기금을 배제한 기금들의 대부분은 해당 전입금들의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그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최근 일반회계 전입금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사업비의 재원을 해당 전입금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소관부처들은 해당 기금에서의 일반회계 전입금의

편성액을 줄여나가도록 재원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더 힘써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전입금의 규모가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지 않거나 정책환경에 따라 전입금의 규모가 증감되지 않는 기금이더라도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입금의 규모가 증가할 수 있고,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책정될 수 있는 전입금이 새롭게 편성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 지출이 늘고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도 재원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기금의 재원구조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지출측면과 수입측면에서 방안이 존재하는데, 지출측면에서는 기금에서 수행하는 사업들 중 성과나 타당성이 낮은 사업들을 축소 또는 폐지 등을 통해 정리하거나 일반회계에서 수행해도 무방한 사업들을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기금에 편성된 사업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 수입측면에서는 법정부담금 등 새로운 재원 발굴, 이자 및 재산수입 증대를 통한 재원 확충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나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지만 현 시대의 흐름과 공익 증진 목적에 부합하는 각각의 목적세를 구상·발굴하는데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각 측면의 현실성을 고려할 때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 관리를 위한 수입측면의 개선은 장기적으로 추진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지출측면에서 조정을 해 나감이 적절할 것이다.

1. 연구 개요

정부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근거해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2020년 현재 23개 중앙부처에서 67개의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운용규모 총계는 당초 계획 기준 724.8조원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20a).

기금은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일반회계와 구별되며, 예산과 독립적인 수입구조가 기금 설립 및 존치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기금운용 주체는 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체수입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기금의 자체수입원으로는 보험료, 법정부담금, 이자수입, 용자원금회수, 배당금 등이 있는 가운데, 기금의 지출규모에 비해 자체수입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차입금) 등으로 지출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이에 현재 매년 여러 기금의 지출재원 충당을 위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통한 내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매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일부 기금은 법률과 경제상황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의 기금 전입이 의무화되거나 불가피하게 전입금이 편성되고 있지만, 일반회계로부터 기금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있다는 재량규정에 근거하여 매년 관행적으로 전입금을 재원으로 충당하는 기금들도 적잖이 존재하고 있다. 기금을 통해 수행하려는 사업비에 대한 재원 충당이 자체수입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부족한 재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함은 시기 및 상황에 따라 일정부분 필요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금 재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이 높거나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기금 설치·운영의 목적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 같은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와 수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입금에 대한 문제는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 상임위원회 등의 예·결산 검토보고서와 기획재정부의 「기금 존치평가보고서」에서도 종종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편성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각 기금의 수입 및 지출구조와 경제 및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해당 전입금의 규모와 편성이 적정한지를 진단하고자 한다. 먼저 2021년 정부예산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일반회계로부터의 기금 전입금 현황을 살펴보고, 분석대상 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와 편성의 적정성을 진단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편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일반회계로부터의 기금 전입금 현황

1) 기금 수입구조 개요 및 2021년 일반회계 전입금 현황

정부 기금은 사업성, 사회보험성, 계정성, 금융성의 4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업성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재원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기금, 사회보험성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

는 기금으로 가입자의 기여금, 사용자 부담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급여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금, 계정성은 특정 목적의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 금융성은 정부 출연금, 부담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보증·보험 등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금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기금 수입원은 크게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여유자금회수로 분류할 수 있다. 자체수입은 법정부담금, 사회보장기여금, 용자원금회수 등으로,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는 일반회계 전입금, 타 기금 예탁원리금 회수, 예수금 등으로, 여유자금회수는 한국은행 및 통화금융기관의 예치금회수 등의 재원으로 구성된다.

2021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17개 부처 소관 일반회계에서 23개 기금으로의 전입금을 편성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는 23개 기금은 유형별로 보험성 6개, 사업성 14개, 계정성 3개로 분류된다. 동년도 예산안에서는 일반회계로부터의 기금 전입금으로 총 31개 세부사업에 의한 18조 7,411억원이 편성되었다(<표 1> 참고). 이 중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보험성)이 3.8조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으며 그 다음은 주택도시기금(3.2조원, 사업성), 군인연금기금(2.8조원, 보험성), 공적자금상환기금(2.6조원, 계정성) 순이다.

<표 1> 2021년 정부예산안 기준 일반회계로부터의 기금 전입금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	전출금 사업	'21 예산안	기금명	기금유형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전출(고용보험운영)	200	고용보험기금	보험성
	고용보험기금 전출(모성보호지원)	220,000		
	고용보험기금 전출 (청년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원)	580,000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전출 (산재보험운영)	6,300	산재재해보상기금	보험성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전출 (산재예방지원)	10,000		
		임금채권보장기금 전출(임채기금운영)	82	임금채권보장기금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전출 (국제정책대학원 사학연금부담금)	9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보험성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전출 (사학연금부담금)	940,594		
	사학진흥기금 전출	446	사학진흥기금	사업성
국가보훈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전출	78,636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사업성
국방부	군인연금기금 전출(군인연금 부담금)	2,818,193	군인연금기금	보험성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 전출	3,224,521	주택도시기금	사업성

부처	전출금 사업	'21 예산안	기금명	기금유형
금융위원회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2,600,000	공적자금상환기금	계정성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용자계정) 전출 (이차보전)	4,600	공공자금관리기금	계정성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전출 (대려차관보증채무이행)	16,725		
	대외경제협력기금 전출	790,318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성
농림축산식품부	양곡증권정리기금 전출	195,455	양곡증권정리기금	계정성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전출	37,750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성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	20,370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성
	지역신문발전기금 전출	8,700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성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전출	106,054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성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금 전출	199,430	응급의료기금	사업성
	국민연금기금 전출 (국민연금공단관리운영비)	10,000	국민연금기금	보험성
	국민연금기금 전출(출산크레딧급여)	199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혁신계정) 전출	22,310	산업기술진흥및 사업화촉진기금	사업성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기금 전출(공무원연금부담금)	3,568,350	공무원연금기금	보험성
국방부	공무원연금기금 전출(공무원연금부담금)	261,590		
방위사업청	공무원연금기금 전출(공무원연금부담금)	9,58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전출	1,344,994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사업성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전출	1,565,561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사업성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전출	100,000	남북협력기금	사업성
합계		18,741,051		

출처: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자료를 토대로 작성

2) 최근 5년간 일반회계로부터의 기금 전입금 규모 추이

2017~2021년 일반회계로부터의 기금 전입금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표 2>와 같으며, 2021년 정부안 기금 전입금 총 규모는 전년대비 약 2조원, 19.2% 증가하였다. 기금 전입금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기금 전입금 규모의 연평균증가율은 12.1%로 나타나고 있다.

2021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전입금이 10억원 이상이며, 최근 3~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5% 이상인 기금을 도출하면, 고용보험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주택도시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 이에 해당한다.

<표 2> 2017~2021년 전출금 사업별 일반회계로부터의 기금 전입금 규모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	전출 내용	'17 당초예산	'18 당초예산	'19 당초예산	'20 당초예산	'21 예산안	연평균 증가율 ('17~'2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운영에 대한 전출	718	200	200	200	200	-27.35
	모성보호지원에 대한 전출	70,000	90,000	140,000	180,000	220,000	33.15
	청년정책지원에 대한 전출				400,000	580,000	45.00
	고용보험기금 합계	70,718	90,200	140,200	580,200	800,200	83.41
	산재보험운영에 대한 전출	6,300	6,300	6,300	6,300	6,300	0.00
	산재예방지원에 대한 전출	9,200	9,200	9,200	9,200	10,000	2.11
	산재보험기금 합계	15,500	15,500	15,500	15,500	16,300	1.27
	임채기금운영에 대한 전출	82	82	82	82	82	0.00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제정책대학원 사학연금 부담금에 대한 전출	117	200	201	165	91	-6.09
교육부	사학연금부담금에 대한 전출	823,969	815,057	895,689	895,725	940,594	3.36
	사학연금기금 합계	823,969	815,057	895,803	896,025	941,040	3.38
	사학진흥기금 전출			114	300	446	97.79
국가보훈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전출		54,686	76,203	76,689	78,636	12.87
국방부	군인연금기금 전출	2,504,619	2,607,643	2,727,770	2,782,574	2,818,193	2.99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 전출	717,373	944,762	1,639,702	2,424,024	3,224,521	45.61
금융위원회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1,800,000	2,100,000	2,100,000	2,100,000	2,600,000	9.63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용자계정) 전출			15,900	4,600	4,600	-46.21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전출			26,390	10,599	16,725	-20.39
	대외경제협력기금 전출	732,704	671,322	779,990	788,058	790,318	1.91
농림축산식품부	양곡증권정리기금 전출	176,991	216,623	305,180	194,644	195,455	2.5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전출		25,000	30,441	30,441	37,750	14.73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		50,000	50,000	21,000	20,370	-25.87
	지역신문발전기금 전출	8,222	8,000	8,000	8,000	8,700	1.42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전출	80,110	80,110	82,440	82,440	106,054	7.27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금 전출	172,718	180,856	184,433	173,386	199,430	3.66
	국민연금공단관리운영비에 대한 전출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0.00
	출산크레딧급여에 대한 전출	116	157	177	177	199	14.45
	국민연금기금 합계	10,116	10,157	10,177	10,177	10,199	0.22

부처	전출 내용	'17 당초예산	'18 당초예산	'19 당초예산	'20 당초예산	'21 예산안	연평균 증가율 ('17~'2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 기금 (혁신계정)전출			23,000	23,000	22,310	-1.51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부담금 전출	3,337,513	3,441,332	2,774,653	3,060,360	3,568,350	1.69
국방부	공무원연금부담금 전출	136,112	210,211	212,756	238,717	261,590	17.74
방위사업청	공무원연금부담금 전출	7,962	7,775	8,210	8,543	9,582	4.74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기금 합계	3,481,587	3,659,318	2,995,619	3,307,620	3,839,522	16.08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전출	545,720	564,874	760,246	826,348	1,344,994	25.30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전출	492,805	685,823	776,013	1,217,250	1,565,561	33.51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전출	220,000	80,000	100,000	150,000	100,000	-17.89
	기타	25,008		483			
	합계	11,853,351	12,860,213	13,743,290	15,722,822	18,741,051	12.13

출처: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자료를 토대로 작성

2021년 정부제출안 기금별 총세입 규모 대비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 비중과 전년대비 2021년 전입금 증가율을 살펴보면 <표 3>과 같으며, 총세입 규모 대비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의 비중이 가장 큰 기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96.4%)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는 양곡증권정리기금(87.9%), 지역신문발전기금(87.4%), 군인연금기금(78.1%), 응급의료기금(64.8%), 대외경제협력기금(55.6%),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49.4%) 순이다.

<표 3> 기금별 총세입 규모 대비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 비중 및 전년대비 2021년 전입금 증가율
(단위: 백만원, %)

부처	전출 내용	'21 전입금 편성액(안)	전년대비 '21 증가율	'21 기금 총세입 규모(안)	총세입 대비 전입금 비중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운영에 대한 전출	200	0.00	22,434,761	3.57
	모성보호지원에 대한 전출	220,000	22.22		
	청년정책지원에 대한 전출	580,000	45.00		
	고용보험기금 합계	800,200	37.92		
	산재보험운영에 대한 전출	6,300	0.00	18,196,438	0.09
	산재예방지원에 대한 전출	10,000	8.70		
	산재보험기금 합계	16,300	5.16		
	임채기금운영에 대한 전출	82	0.00	1,012,249	0.01

부처	전출 내용	'21 전입금 편성액(안)	전년대비 '21 증가율	'21 기금 총세입 규모(안)	총세입 대비 전입금 비중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제정책대학원 사학연금 부담금에 대한 전출	91	-44.85	13,013,477	7.23
교육부	사학연금부담금에 대한 전출	940,594	5.01		
	사학연금기금 합계	941,040	5.02		
	사학진흥기금 전출	446	48.67	480,858	0.09
국가보훈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전출	78,636	2.54	159,156	49.41
국방부	군인연금기금 전출	2,818,193	1.28	3,607,431	78.12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 전출	3,224,521	33.02	82,117,081	3.93
금융위원회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2,600,000	23.81	6,142,351	42.33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용자계정) 전출	4,600	0.00	407,967	1.13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전출	16,725	57.80	259,416,771	0.01
	대외경제협력기금 전출	790,318	0.29	1,421,821	55.58
농림축산식품부	양곡증권정리기금 전출	195,455	0.42	222,476	87.85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전출	37,750	24.01	1,662,463	2.27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	20,370	-3.00	495,883	4.11
	지역신문발전기금 전출	8,700	8.75	9,960	87.35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전출	106,054	28.64	109,985	96.43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금 전출	199,430	15.02	307,926	64.77
	국민연금공단관리운영비에 대한 전출	10,000	0.00	133,768,799	0.00
	출산크레딧급여에 대한 전출	199	12.43		
	국민연금기금 합계	10,116	0.2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혁신계정)전출	22,310	-3.00	265,163	8.41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부담금 전출	3,568,350	16.60	24,061,392	5.32
국방부	공무원연금부담금 전출	261,590	9.58		
방위사업청	공무원연금부담금 전출	9,582	12.16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기금 합계	3,839,522	16.08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전출	1,344,994	62.76	5,502,246	24.44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전출	1,565,561	28.61	10,949,036	14.30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전출	100,000	-33.33	1,673,345	5.98
합계		18,741,051			

출처: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자료를 토대로 작성

2020년 대비 2021년 정부제출안 일반회계 기금 전입금 증가율에서는 소상공인시장기금이 62.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57.8%), 사학진흥기금(48.7%), 고용보험기금(37.9%), 주택도시기금(33.0%), 범죄피해자보호기금(28.6%),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28.6%), 관광진흥개발기금(24.0%) 순이다.

3) 분석대상 기금 전입금 선정

각 기금마다 해당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세입 재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부터 충당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보험성 기금의 경우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을 제외한 국민연금기금, 사립교직원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의 직역연금 기금은 현재 수입보다 지출 규모가 큰 재정구조에 따라 매년 상당한 규모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기금에서는 국가 부담금 또는 비용부족분에 대한 국가부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존재하고 사회적으로도 해당 기금에 대한 정부재원 지원에 대한 합의가 널리 이루어졌기에 직역연금 기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거래에 대한 적정성을 진단할 의미가 크지 않다. 그리고 공적자금상환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등의 계정성 기금에서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이 이루어지는 근거와 규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정성 기금 또한 직역연금 기금과 동일하게 일반회계 전입금 거래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크지 않다.

이에 직역연금 기금과 계정성 기금을 제외한 기금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기금을 제외한 기금들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규모 추이를 다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2021년 정부안에 따른 기금 전입금의 규모는 8.3조원으로 전년대비 1.9조원(28.4%) 증가하였으며 2011~2021년 연평균증가율은 28.4%이다.

<표 4> 2017~2021년 전출금 사업별 일반회계로부터의 기금 전입금 규모 현황(직역연금 기금, 계정성 기금 제외)
(단위: 백만원, %)

부처	전출 내용	'17 당초예산	'18 당초예산	'19 당초예산	'20 당초예산	'21 예산안	연평균 증가율 ('17~'2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운영에 대한 전출	718	200	200	200	200	-27.35
	모성보호지원에 대한 전출	70,000	90,000	140,000	180,000	220,000	33.15
	청년정책지원에 대한 전출				400,000	580,000	45.00
	고용보험기금 합계	70,718	90,200	140,200	580,200	800,200	83.41
	산재보험운영에 대한 전출	6,300	6,300	6,300	6,300	6,300	0.00
	산재예방지원에 대한 전출	9,200	9,200	9,200	9,200	10,000	2.11
	산재보험기금 합계	15,500	15,500	15,500	15,500	16,300	1.27

부처	전출 내용	'17 당초예산	'18 당초예산	'19 당초예산	'20 당초예산	'21 예산안	연평균 증가율 ('17~'21)
	임채기금운영에 대한 전출	82	82	82	82	82	0.00
교육부	사학진흥기금 전출			114	300	446	97.79
국가보훈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전출		54,686	76,203	76,689	78,636	12.87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 전출	717,373	944,762	1,639,702	2,424,024	3,224,521	45.61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 전출	732,704	671,322	779,990	788,058	790,318	1.9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전출		25,000	30,441	30,441	37,750	14.73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		50,000	50,000	21,000	20,370	-25.87
	지역신문발전기금 전출	8,222	8,000	8,000	8,000	8,700	1.42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전출	80,110	80,110	82,440	82,440	106,054	7.27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금 전출	172,718	180,856	184,433	173,386	199,430	3.66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 기금 (혁신계정)전출			23,000	23,000	22,310	-1.51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전출	545,720	564,874	760,246	826,348	1,344,994	25.30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전출	492,805	685,823	776,013	1,217,250	1,565,561	33.51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전출	220,000	80,000	100,000	150,000	100,000	-17.89
기타				483			
합계		3,055,952	3,451,215	4,666,364	6,416,718	8,315,672	28.44

출처: 열린재정 자료를 토대로 작성

상기 기금 중에서 고용보험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을 제외하면 모든 기금이 사업성 기금이다. 이 중 임채기금과 사학진흥기금은 기금운영에 대한 비용부담(임채기금에 해당)이고 전입금 규모가 소규모인 점에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여 14개 기금을 대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와 전입금 거래에 대한 적정성을 진단하고자 한다. 분석대상 기금의 예산 규모와 지원근거 및 내용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분석대상 기금의 2021년 정부안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와 지원근거 및 내용

(단위: 백만원, %)

기금명	2021(안)	'21년 총세입 대비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	지원근거 및 내용
고용보험기금	800,200	3.57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과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요인 해소를 위한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의 사회분담 확대를 위해 일반회계에서 모성보호 급여 지원 고용보험법 제5조에 따라 고용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함으로써, 고용보험기금(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의 재정건전성 등을 도모
산재재해보상기금	16,300	0.09	산재보험의 사무집행 및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근로자 보호에 기여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정부 일반회계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증진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78,636	49.41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 사업 지급 재원(특별예우금, 생활지원금, 가계지원비 등)
주택도시기금	3,224,521	3.93	장기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자체에 건설비용의 일부를 출자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입
대외경제협력기금	790,318	55.58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출연
관광진흥개발기금	37,750	2.27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입금으로 산정
문화예술진흥기금	20,370	4.11	문예기금 재원안정화를 위한 일반회계에서 문예기금으로의 전입금
지역신문발전기금	8,700	87.35	일반회계전입금,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거 '2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06,054	96.43	해당연도 예상 벌금수납액의 8%를 바탕으로 일반회계전입금을 산출
응급의료기금	199,430	64.7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한 과태료 및 범칙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기관에 징수하는 과징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35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총당금
산업기술진흥및 사업화촉진기금	22,310	8.41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정책으로 발생하는 수입 감소소요(2022년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344,994	24.44	경상지출 등 사업 수행에 따른 사업비와 기금운영비 등을 정부출연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3을 기준)으로 충당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1,565,561	14.30	경상, 자본지출 사업 수행에 따른 지출대비 수입 부족분 및 용자사업수행에 따른 이차보전소요액, 기금관리비 등을 정부출연금으로 충당
남북협력기금	100,000	5.98	기금법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정부출연금

출처: 기금 소관 부처별 「2021년도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토대로 작성

3. 기금별 일반회계로부터의 기금 전입금 규모 및 전입금 거래 적정성 진단

1) 고용보험기금(고용노동부)

①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 현황

고용보험기금은 2021년 예산안 기준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운영지원, 모성보호지원(출산 및 육아 휴직급여 지원), 청년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원의 목적으로 8,002억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다. 동 기금은 실업급여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계정으로 구분되며 모성보호지원에 대한 전출금은 실업급여계정의 수입으로, 청년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지원에 대한 전출금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 수입으로 편성된다.¹⁾

<표 6> 내역별 일반회계로부터의 고용보험기금 전입금 규모 추이

(단위: 백만원, %)

전출 내용	'17 당초예산	'18 당초예산	'19 당초예산	'20 당초예산 (추경)	'21 예산안	연평균 증가율 ('17~'21)
고용보험운영에 대한 전출	718	200	200	200	200	-27.35
모성보호지원에 대한 전출	70,000	90,000	140,000	180,000	220,000	33.15
청년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지원에 대한 전출				400,000 (970,000)	580,000	45.00
고용보험기금 합계	70,718	90,200	140,200	580,200 (1,150,000)	800,200	83.41

고용보험운영에 대한 전출금은 2억원 수준으로 2018년부터 동일한 규모로 편성되어 오고 있으며, 모성보호지원에 대한 전출금은 '21년 예산안 기준 2,200억원으로 '17년부터 33.2%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며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표 7> 참고). 청년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지원에 대한 전출금은 '20년부터 편성되었으며, 동년 추경에서 2배 이상 증액편성 되었으며, '21년 예산안에서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5% 증가한 5,800억원이 편성되었다.

모성보호지원을 위한 전입금은 2001년부터 편성되어오고 있는데, 실업급여계정 지출규모 대비 모성보호급여의 지출 비중이 '20년 13.5%에 이르는 만큼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매년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실업급여계정 수입지원을 위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실업급여계정 지출액 중 모성보호급여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의 비중도 '20년 기준으로 1.6%에 이르고 있다.

1) 고용보험기금 운영에 대한 전출금이 어느 계정 수입으로 편성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7> 실업급여계정 지출 및 모성보호급여 지출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실업급여 계정지출(A)	모성보호 급여(B)	비율 (B/A)	일반회계 전입금 (C)	비율 (C/B)	비율 (C/A)
'16년	5,855,703	884,015	15.1	70,000	7.9	1.2
'17년	6,285,842	935,614	14.9	90,000	9.6	1.4
'18년	7,915,713	1,104,076	13.9	90,000	8.2	1.1
'19년	8,964,004	1,350,031	15.1	140,000	10.4	1.6
'20년	11,444,901	1,543,248	13.5	180,000	11.7	1.6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20e).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저출산 해소 및 여성권리 보장을 위해 모성보호급여 지원이 확대되고 급여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모성보호급여 지출의 증가는 실업급여계정의 재정수지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업급여계정은 재정수지에서 2018~2020년 3년 연속하여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표 8> 참고), 적립배율(적립금/당해년도 지출액)은 '18년 0.8, '19년 0.4, '20년 0.2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실업급여계정의 재정수지 관리 개선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적 맥락 가운데 모성보호급여 지원 확대를 위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보다 증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²⁾

<표 8>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 재정수지 현황

(단위: 억원, 배)

구분	2018	2019	2020			2021(안)		비고
			당초 계획	기금 변경안	공자기금 차입분 제외	당초 계획	공자기금 차입분 제외	
수입	76,407	84,756	102,034	135,034	102,034	136,529	110,529	법정적립 배율: 1.5~2.0
지출(a)	79,157	98,558	114,449	149,578	149,405	135,337	134,273	
재정수지	△2,750	△13,802	△12,415	△14,544	△47,371	1,192	△23,744	
적립금(b)	55,201	41,374	28,959	26,830	-	28,022	-	
적립배율(b/a)	0.7	0.4	0.3	0.2	-	0.2	-	

주: 2018~2019년은 결산, 2020년은 9월말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액 기준, 2021년은 정부안 기준임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20e).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2) 20대 국회에서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 적용 확대를 위해 모성보호급여의 30% 이상 일반회계 전입을 법정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 의결('17.9월)되기도 하였으나 20대 국회에서 임기만으로 폐기되었다.

청년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지원을 위한 전입금은 청년을 비롯한 경제인구의 실업난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어 고용보조금, 직업훈련 등의 재정일자리 사업 확대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계정의 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동 계정의 재정수지 보전을 위해 '20년부터 편성이 되고 있다. 상기 목적의 대표적 고용보험기금 사업으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으며, 해당 두 임금보조금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20년 당초예산 기준 1.5조원으로 해당 계정 지출규모의 36.9%에 해당한다. 동 계정 역시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실업급여 계정과 동일하게 최근 3년 동안의 재정수지와 적립배율이 악화되고 있다(<표 9> 참고).

<표 9> 고용보험기금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 재정수지 현황

(단위: 억원, 배)

구분	2018	2019	2020			2021(안)		비고
			당초 계획	기금 변경안	공자기금 차입분 제외	당초 계획	공자기금 차입분 제외	
수입	31,193	33,752	38,869	58,566	44,569	48,795	42,795	법정적립 배율: 1.5~2.0
지출(a)	36,566	40,894	40,468	76,736	76,662	52,647	52,367	
재정수지	△5,374	△7,142	△1,600	△18,170	△32,094	△3,852	△9,572	
적립금(b)	38,886	31,726	30,127	13,556	-	9,704	-	
적립배율(b/a)	1.1	0.8	0.7	0.2	-	0.2	-	

주: 2018~2019년은 결산, 2020년은 9월말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액 기준, 2021년은 정부안 기준임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20e).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이 같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의 재정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정부는 '20년 추경과 '21년 예산안에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증액함과 동시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의 지출 효율화의 일환으로 '21년 예산안에서 숙련기술장려사업, 내일배움카드(K-Digital Training),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 다기능기술자 등 학위과정) 고용보험기금의 7개 사업(2,151억원)을 일반회계로 이관하였다.

② 전입금 규모 및 편성의 적정성 진단

모성보호급여 및 실업급여계정의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기에 실업급여계정의 재정수지 악화는 향후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모성보호급여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증대에 대한 의견과 거시적 차원에서 고용보험료 증액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모성보호급여를 노동측면의 이슈로 접근하여 해당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가운데 일반회계에서 보충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캐나다를 제외한 주요 국가들은 모성보호 급여를 건강

보험 또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있다(<표 10> 참고). 모성보호급여는 여성복지 신장 및 출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이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증대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실업급여가 기본재원이 아닌 타 국가들과 같이 건강보험 등의 의무가입보험과 조세를 기본재원으로 마련함을 통해 출산휴가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는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해당 방식과 같이 모성보호급여의 타 회계 및 재원으로 이전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수지는 개선될 것이다.

<표 10> 주요국가 모성보호 급여 비용 부담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대상	재원	대상	재원
스웨덴	모든 여성	부모보험	모든 부모	부모보험
영국	모든 여성	사회보험+조세	임금노동자	
덴마크	모든 여성	조세	모든 부모	조세
벨기에	임금노동자	건강보험+조세	임금노동자	건강보험+조세
캐나다	임금노동자	고용보험	임금노동자	고용보험
핀란드	임금노동자	건강보험/조세	임금노동자	건강보험
프랑스	임금노동자	건강보험	모든 부모	가족수당기금
독일	임금노동자	고용주+건강보험	임금노동자	조세
일본	임금노동자	건강보험	임금노동자	고용보험
노르웨이	임금노동자	조세/단체협약	임금노동자	조세
한국	임금노동자	고용보험	임금노동자	고용보험

주: 일본은 육아휴직급여 지출의 1/8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함
출처: 한겨레 기사(2016.9.4.). “출산급여·육아휴직급여 급증하는데 예산은 어디서?”

청년추가고용지원금 등 고용보험기금에서 청년대상 임금보조금 사업 등의 재원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 전입금은 상기 두 사업이 향후 신규지원을 중단하거나 사업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일 계획에 있어 이후 동 계정으로의 전입금은 편성되지 않거나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실업문제가 향후에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 않기에 동 계정에서 재정일자리사업으로 상당한 지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또한 계속해서 편성될 수 있다. 대부분의 재정일자리사업이 고용주에게 임금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해당 보조금의 실효성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제기 되고 있는 만큼 고용주 지원 보조금 규모를 무작정 늘리며 해당 계정의 재정수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일반회계 전입금 편입이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당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엄밀히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이 취업자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에서는 고용보험기금을 매칭하지 않고, 일반회계 재원으로만 사업비를 지출하는 사업내용과 방식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고용노동부)

① 일반회계 전입금 현황

산재보험기금은 2021년 예산안 기준 산재보험 운영지원, 산재예방사업 지원의 목적으로 163억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다. 산재보험 운영지원에 대한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전입금 편성 및 규모의 적정성을 필요는 없다. 산재예방사업 지원에 대한 전입금 또한 동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정부에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해야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전입금의 편성도 타당하다. 동 전입금의 규모는 최근 수년 동안 9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21년 예산안에서는 경사노위 합의에 따른 증액요구에 따라 전년대비 8억원 증가한 100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11> 내역별 일반회계로부터의 산재보험기금 전입금 규모 추이

(단위: 백만원, %)

전출 내용	'17 당초예산	'18 당초예산	'19 당초예산	'20 당초예산	'21 예산안	연평균 증가율 ('17~'21)
산재보험운영에 대한 전출	6,300	6,300	6,300	6,300	6,300	0.00
산재예방지원에 대한 전출	9,200	9,200	9,200	9,200	10,000	2.11
산재보험기금 합계	15,500	15,500	15,500	15,500	16,300	1.27

해당 전입금의 지원 대상인 산재예방과 관련한 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20년 기준 5,681억원으로 전년대비 644억원 증가하였으며, 해당지출 규모 대비 산재예방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의 규모의 비중은 1.6% 수준이다(<표 2> 참고).

<표 12> 2018~2020년 산재예방 예산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기금지출예산	59,256	59,769	69,061
예방부문 총계	4,917	5,037	5,681
예방사업비	3,581	3,643	4,197
공단운영비	1,296	1,351	1,436
기타운영비	40	42	48

출처: 월간 안전정보(2020년 6월호). "경사노위, '과로사 방지 종합대책' 추진 합의"

② 전입금 규모 및 편성의 적정성 진단

2020년 4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산재예방지원에 대한 전입금 규모가 2024년까지 기금 전입 근거법률에 규정된 한도 수준인 산재보험기금 지출예산 총액의 3%에 이르지 못함을 문제 제기하며, 3% 수준으로 해당 전입금 규모를 확대해야 함을 요구하였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매년 해당 전입금 규모를 확대할 것을 약속하였으며³⁾ 해당 전입금 규모는 향후 일정 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산재보험기금의 현재 재정수지 및 누적적립금을 고려할 때 일반회계 전입금을 증대함이 적정하고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관련한 논의가 보다 필요하다고 고려된다. 산재보험기금 재정수지는 2015년부터 매년 1.5~2.4조원의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흑자 규모는 매년 증가함에 따라 누적적립금은 2019년 기준 20.3조원에 이르고 있다(<표 13> 참고). 그리고 국회예산정책처(2019a)에 따르면 산재보험기금은 2028년까지 43.2조원의 적립금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표 14> 참고).

<표 13> 2015~2019년 산재보험기금 재정수지 및 누적적립금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입	66,350	71,135	72,895	79,951	84,486
지출	49,727	51,473	53,078	59,509	59,807
- 보험급여	40,791	42,800	44,360	50,339	50,670
- 연금	17,973	18,797	19,712	21,283	22,030
- 일시금	22,818	24,003	24,648	29,056	28,640
재정수지(A-B)	16,623	19,662	19,817	20,442	24,679
누적적립금	118,990	138,653	158,470	178,912	203,591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9a). 「2018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표 14> 2020~2028년 산재보험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

(단위: 조원, %)

구분	2020	2022	2024	2026	2028	연평균증가율
수입	9.4	10.4	11.4	12.4	13.3	4.6
지출	7.4	8.1	8.8	9.6	10.3	4.7
- 보험급여	6.0	6.6	7.3	8.0	8.6	5.1
재정수지	2.0	2.3	2.6	2.8	3.0	-
적립금	22.0	26.5	31.6	37.2	43.2	8.9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9b).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3) 매일노동뉴스 기사(2020.4.28.). “노사정 ‘과로사·장시간 노동 예방’ 첫 단추 꿰다”

이와 같이 산재보험기금에서 지출보다 수입규모가 크고 적립금이 증가하는 추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산재예방사업을 수행하고 향후 확대하기 위해 일반회계로부터의 기금 전입금 보다는 기금 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자체수입을 활용함이 기금운용의 원칙상 더 적절하다고 고려된다. 물론 산재급여 지급이 현재보다 대대적으로 더 확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하고 2020년 7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이 확대되어 <표 15>와 같이 향후 해당 종사자에 대한 산재급여 지출 증가에 따라 산재보험기금 지출 규모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을 고려하면 정책 변화 등에 따라 산재보험기금의 재정수지 흑자가 감소하거나 적자로 악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표 15>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보험료 수입·지출 추계
(단위: 억원,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적용 대상자	88,000	88,000	89,000	89,000	89,000	
수입	285	571	573	575	576	2,480
수급자	4,407	4,421	4,435	4,449	4,463	
지출	386	774	777	779	782	3,498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20b).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재정소요 추계”의 내용을 재구성

그러나 향후 5~10년 내로는 정책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않기에 수년 동안 산재보험기금의 재정수지는 계속해서 적잖은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향후 산재예방사업 수행 및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는 동 기금의 자체수입을 활용하는 가운데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를 이전과 같은 92억원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되는 재정수지의 흑자 상황을 감안하여 해당 전입금 규모를 일정 수준 감액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3)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국가보훈처)

① 일반회계 전입금 현황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은 대일청구권 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 및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을 기반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2021년 정부안 기준 786억원이며, 전년대비 20억원 증가하였다. 동 전입금은 2017년까지 편성이 되지 않다가 2018년부터 애국지사 손자녀 생활지원금 사업⁴⁾이 시행됨에 따라 편성이 되었다.

4) 손자녀 생활지원금 사업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 손자녀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최저생계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2021년 정부안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계층에게는 월 46.8만원이,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에게는 33.5

<표 16> 일반회계로부터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전입금 규모 추이

(단위: 백만원, %)

전출 내용	'17 당초예산	'18 당초예산	'19 당초예산	'20 당초예산	'21 예산안	연평균 증가율 ('17~'21)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전출	-	54,686	76,203	76,689	78,636	12.87

2021년 정부안 순애기금 수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9.4%이며, 지출에서 여유자금 및 기금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3.2% 순애기금은 사업비 재원을 대부분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음으로 나타난다. 토지매각비, 건물임대료(광복회관) 등으로부터의 자체수입 규모는 2021년 73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의 9.3%에 불과하며, 2020년 전년대비 6억원 감소하였다.

<표 17>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수입·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지출 규모	수입			지출			여유자금 규모 (실적)	B/A
		자체수입	일반회계 전입금(A)	여유자금 회수	사업비 (B)	기금 운영비	여유자금 운영		
2019	155,014	7,930	76,203	70,881	81,367	129	73,518	83,023	93.7
2020	137,000	7,938	76,689	52,373	82,563	107	54,330	96,617	92.9
2021(안)	159,156	7,317	78,636	73,203	84,367	105	74,684	-	93.2

출처: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② 전입금 규모 및 편성의 적정성 진단

동 기금의 자체수입은 3년 평균 60억원 수준으로 규모가 크지 않아 일반회계 전입금이 없이는 기금운영비 불가능하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여 국회예산정책처(2017a)는 손자녀 생활지원금 사업 편성에 따라 일반회계 의존도가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해당 사업을 기금에서 수행함이 바람직한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손자녀 생활지원금 사업은 소요재원의 90% 이상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만큼 기금에서 수행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이며, 이에 일반회계 사업으로 수행하여도 공익적 측면에서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된다.

만원이 지원된다.

4)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① 일반회계 전입금 현황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을 통해 재원을 조성할 수 있으며, 현재 정부는 장기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자체에 건설비용의 일부를 출자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을 편성하고 있다. 해당 전입금은 2021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3.2조원이며, 전년대비 약 8,000억원 증가하였으며, '17년부터 연평균증가율 45.6%을 보이며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표 18> 일반회계로부터의 주택도시기금 전입금(주택계정) 규모 추이

(단위: 백만원, %)

전출 내용	'17 당초예산 (추경)	'18 당초예산 (추경)	'19 당초예산 (추경)	'20 당초예산	'21 예산안	연평균 증가율 ('17~'21)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 전출	717,373 (923,819)	944,762 (1,037,970)	1,639,702 (1,736,807)	2,424,024	3,224,521	45.61

'21년 정부안 기준으로 해당 전입금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다가구 매입출자'가 2.6조원으로 가장 큰 규모이며, 행복주택출자도 1.4조원에 이르고 있다. '21년 해당 전입금 증가요인으로는 '통합공공임대출자(831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3,535억원)이 새로이 편성되었고, 다가구 매입출자가 전년대비 7,700여억원 증가함을 들 수 있다(<표 19> 참고).

<표 19> 2019~2021년 주택도시기금 전입금(주택계정)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국민임대출자	357,052	568,147	345,175
영구임대출자	276,788	363,476	405,201
다가구 매입출자	1,354,700	1,731,900	2,605,900
행복주택출자	995,137	1,208,177	1,438,381
전세임대경상보조	75,677	126,915	102,725
통합공공임대출자	-	-	83,112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	-	353,535
이차보전	103,048	201,806	196,175
복권기금	-592,709	-550,361	-550,361
정산금	-34,888	-64,526	-48,604
기금부담금	-895,103	-1,161,510	-1,702,721

구분	2019	2020	2021
합계(A)	1,639,702	2,424,024	3,224,521
주택계정 사업비 지출액(B)	22,444,372	25,273,090	29,872,448
A/B	7.3	9.6	10.8

출처: 국토교통부 각년도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주택계정 사업비 지출액 대비 해당 전입금의 비중을 살펴보면 '19년 7.3%, '20년 9.6%, '21년 정부안 10.8%로 매년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② 전입금 규모 및 편성의 적정성 진단

주택계정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대부분 용자 사업으로 해당 계정 지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점점 늘어나는 주거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주택계정에서의 용자사업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동 기금 주택계정은 '20년 정부안 기준 정부출자수입(출자대상 기관으로부터의 배당금, 4,168억원), 기타민간이자수입(3.3조원), 기금예탁이자수입(2,415억원) 등의 자체수입원을 가지고 있지만, 자체수입원만으로는 늘어나고 있는 사업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0>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 용자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18 당초예산	'19 당초예산	'20 당초예산	'21 예산안
용자사업비	16,859,915	18,073,838	21,195,955	24,084,212
지출액(순계)	22,594,433	24,987,359	28,640,990	32,582,607

출처: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그러나 나라살림연구소(2020a)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의 방식대로 정부가 용자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방식은 사업 재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대규모 정부 재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차보전금⁵⁾을 활용하는 방식이 용자 방식보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더 높다고 고려된다. '20년 기준 동 기금에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에 용자를 위해 9.4조원의 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는데,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차이가 약 2%p라고 가정했을 때 상기금액에 대한 이차보전 금액은 1,900억원에 불과하다. 이 같이 이차보전금이 더 효율적인 자금집행 방안이 될 수 있기에 정부는 이차보전금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해당 전입금을 줄이며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5) 이차보전은 정부가 대규모 자금을 조성할 필요 없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성하여 정부는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차액만큼 용자 대상에게 지원해주는 방안이다.

5) 대외경제협력기금(기획재정부)

① 일반회계 전입금 현황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에 양허성 차관을 공여하는 기금으로써 동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매년 전입금이 편성되고 있다. 해당 전입금은 2021년 정부안 기준 7903억원이며 전년대비 23억원 증가하였으며, '17년부터의 연평균증가율은 1.91%이다.

<표 21> 일반회계로부터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전입금 규모 추이

(단위: 백만원, %)

전출 내용	'17 당초예산	'18 당초예산	'19 당초예산	'20 당초예산	'21 예산안	연평균 증가율 ('17~'21)
대외경제협력기금 전출	732,704	671,322	779,990	788,058	790,318	1.91

동 기금의 재원은 크게 일반회계 전입금, 공자기금 예수금, 용자 원리금 회수금, 여유자금 운용 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 일반회계 전입금의 비중이 55.6%로 가장 크다(<표 1> 참고). 용자금 이자수입, 여유자금 운용수입 등의 자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의 비중은 3.2%이다.

<표 22> 대외경제협력기금 수입 자원별 비중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 결산	2020년 계획		2021년 계획안	비 중
		당초	수정		
일반회계 전입금	779,990	788,058	588,058	790,318	55.6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272,000	384,181	384,181	371,882	26.2
용자금 원금 회수	159,648	177,767	177,767	200,862	14.1
용자금 이자수입	40,755	42,318	42,318	44,662	3.1
여유자금 회수(정부예금회수)	23,271	19,091	19,091	12,729	0.9
여유자금 운용수입	2,410	1,118	1,118	1,368	0.1
합 계	1,278,075	1,412,533	1,212,533	1,421,821	100.0

출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2020). 「2021년 예산안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② 전입금 규모 및 편성의 적정성 진단

동 기금에서 주요하게 수행하는 대개도국 차관 사업은 용자 방식이므로 이후 용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기금 자원 마련에 있어 예금이자, 경상이전 등 기금에 귀속되는 자체수입 재원의 비중이 작고, 자체수입 재원의 비중이 클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정부가 매년 대개도국차관 규모를 늘

려가고 있어(<표 23>) 참고 회계연도의 용자금 원금 회수만으로는 용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없어 일반회계 전입금을 편성하고 해당 전입금 규모를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2019년부터 매년 평균적으로 3,000억원 이상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으로 기금재원을 마련하고 있어 일반회계 전입금과 공자기금 예수금에 대한 의존도가 큰 점을 고려하면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아직까지 안정적 운용 구조가 확립되지 않다고 볼 수 있다(<표 23> 참고).

<표 23> 대개도국차관 사업 2019년 결산 및 예산규모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17 당초예산(수정)	'18 당초예산	'19 당초예산	'20 당초예산(수정)	'21 예산안
아시아차관	374,266 (300,205)	344,022	354,532	416,394 (355,136)	438,680
아프리카차관	208,387 (234,995)	188,859	283,382	229,367 (159,891)	355,579
중동·CIS차관	100,526 (95,800)	213,648	76,476	76,872 (72,154)	77,884
중남미차관	36,211 (100,021)	59,652	64,573	41,244 (28,502)	48,046
태평양차관	89,331 (77,700)	90,115	129,740	142,887 (128,706)	149,271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145,757	161,805	232,528	278,115 (240,490)	243,736
합계	954,468	1,058,101	1,141,231	1,184,879 (984,879)	1,313,196

출처: 외교부. 각년도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원리금이 본격적으로 상환되기 전까지는 현재 규모로 대개도국차관 사업을 이어나간다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자금재원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 대개도국 차관은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으로서 용자를 통한 수익 발생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2020)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는 정부 전입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기금 수입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보다 진취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해당 방안 중 하나로써 공공기관 등 타기관 출연금 확보를 통한 자원 마련을 강구할 수 있다.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4조에 따르면 정부 출연금이나 공자기금 예수금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경제단체의 출연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공공기관 등을 통한 출연금 수납 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다. 공공기관 등은 해외 사업 수주 등 각종 해외 진출에 있어 동 기금을 통한 수혜를 받고 있는 입장이므로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출연금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6) 관광진흥개발기금(문화체육관광부)

① 일반회계 전입금 현황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은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2018년부터 편성되기 시작하였으며,⁶⁾ 관세법에 의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해당 전입금으로 반영된다.

2021년 정부안 기준 일반회계 전입금의 규모는 378억원이며 전년대비 73억원 증가하였다. 해당 전입금의 규모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수입규모에 연동하여 비례하는데, 정부는 '21년 정부예산안에서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예상수입액이 전년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여 동년도 해당 전입금 규모를 전년대비 증액하였다.

<표 24> 일반회계로부터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전입금 규모 추이

(단위: 백만원, %)

전출 내용	'17 당초예산	'18 당초예산	'19 당초예산	'20 당초예산	'21 예산안	연평균 증가율 ('17~'21)
관광진흥개발기금 전출	-	25,000	30,441	30,441	37,750	14.73

② 전입금 규모 및 편성의 적정성 진단

2018년부터 편성된 일반회계 전입금은 동 기금을 통한 정부 관광사업 확충과 이에 필요한 재원의 다양화를 위해 새로이 편성된 것으로 고려되며, 해당 전입금은 법정 정률 출연금으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수입액에 연동되어 산정되기 때문에 해당 전입금 편성 및 규모의 적정성을 논의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다만 현재 동 기금의 재정구조 및 정책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정부의 재량적 예산편성을 통해 일반회계 전입금이 편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21년 정부안 기준 관광부문 예산에서 동 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88.9%⁷⁾로 관광예산의 대부분을 동 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다(<표 25> 참고). 2020년 관광기금 수입 계획안(당초)을 살펴보면 법정부담금(45.3%)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 중 법정부담금은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출국납부금'과 국내 카지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카지노납부금'으로 구성된다.⁸⁾

6) '16년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5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출연하기로 논의되었다.
7) 2021년 관광부문 예산은 1조 4,811억원이며, 일반회계 38억원(0.3%), 균특회계 1,664억원(11.2%), 관광기금 1조 3,109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8) 출국납부금으로 항공이용 출국자에 1만원, 항만이용 출국자에 1천원이 부과되며, 카지노납부금으로 카지노사업자에게 총 매출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일정비율의 금액이 부과된다.

<표 25> 2020년 및 2021년 관광기금 수입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기타재산 수입	법정 부담금	기타경상 이전수입	통화금융 기관지원 금회수	정부예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 전입금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수금	총계
2020 (수정)	10,381	687,312	16,615	600,344	173,427	30,441	(40,000)	(230,000)	1,518,520 (1,662,463)
2021	8,838	534,700	15,372	482,300	283,503	37,750	-	300,000	1,662,463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20f). 「2021년도 예산안위원회별 분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외 여행자가 급감하면서 동 기금의 주요재원인 출국납부금과 카지노납부금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될 경우 관광기금의 재정 악화가 심화될 수 있다. '21년 출국납부금은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는 4,006억원이 편성되었지만, 2020년 연말 기준 출국납부금이 2019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919억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19년 결산치를 적용하여 출국납부금의 계획안을 편성한 것은 과다계상으로 고려된다(<표 26> 참고).

<표 26> 2021년도 출국납부금 및 카지노납부금 수입계획안 및 편성근거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 결산	2020 수정	2021 계획안	2021년 편성근거
출국납부금	400,591	417,695 (실제 91,931 예상)	400,600	- '19년 출국납부금 결산치 적용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출국자 수 감소는 '21년 정상 회복 가정
카지노납부금	247,077	269,617	134,100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카지노영업장 휴업에 따른 매출액 감소 반영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카지노영업장 휴업은 '20년 8월부터 회복 가정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20f). 「2021년도 예산안위원회별 분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와 같이 출국납부금과 카지노납부금 급감에 따른 동 기금의 수입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업계의 피해회복 지원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관광정책 추진으로 지출 소요는 증가추세에 있는 가운데 사업재원 충당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이 추가로 편성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원칙상 일반회계 전입금을 증대함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정부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새로이 편성하기보다 수입측면에서 추가적인 기금재원 발굴하고, 지출측면에서 기금 사업 중 일부를 일반회계 사업으로 이관을 하거나 불필요한 사업 조정 등 지출효율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7) 문화예술진흥기금(문화체육관광부)

① 일반회계 전입금 현황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은 창작환경 개선과 복지강화를 통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을 위해 2018년부터 편성되기 시작하였다.⁹⁾ 2021년 정부안 기준 일반회계 전입금의 규모는 204억원이며 전년대비 6억원 감소하였다. 다른 전입금이 처음 편성된 '18년과 이후 '19년에는 해당 전입금의 규모는 500억원이었으나 '20년 210억원으로 감소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이 편성되는 타 기금과 달리 해당 전입금의 규모가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정부가 동 기금 재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을 단기적으로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 타 기금이나 수익금의 법정 전입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고려된다.

<표 27> 일반회계로부터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입금 규모 추이

(단위: 백만원, %)

전출 내용	'17 당초예산	'18 당초예산	'19 당초예산	'20 당초예산	'21 예산안	연평균 증가율 ('17~'21)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	-	50,000	50,000	21,000	20,370	-25.87

② 전입금 규모 및 편성의 적정성 진단

상기 살펴본 바와 같이 동 기금으로의 전입금 규모가 축소되고 있음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고려되며, 정부는 향후 전입금 규모를 줄여나가도록 동 기금에 대한 재정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동 기금의 재원구조가 공고하게 안정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일반회계 전입금은 향후에 다시 증가할 여지가 있다고 고려된다.

'20년 당초예산 기준 정부예금회수를 제외한 동 기금의 총수입에서 경상이전수입 등 자체수입의 비중은 18.4%에 불과하며 나머지 수입을 타 회계 및 기금의 전입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표 28> 참고). '21년 정부안 수입내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기타영업외잡수입¹⁰⁾을 포함한 자체수입이 계획액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동일한 이유로 관광진흥개발기금 전입금도 삭감된 가운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예술인 지원사업 확장으로 '21년 지출(통화금융기관예치를 제외)은 전년대비 300억원 증가하여 동 기금의 재정수지는 단기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¹¹⁾

9) 정부는 17.7. 발표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68번째 과제로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을 제시하였으며, 주요 세부과제로 '문예기금 재원대책 마련' 제시하였다.

10) 경정 및 경륜 수익금의 24.5%에 해당하는 금액이 동 기금의 수입으로 편성된다.

11) 동 기금의 주요 재원인 모금제(공연장, 박물관·미술관, 문화재 등 입장료의 일정액을 기금 수입으로 모금)가 2003년 폐지된 이후 2017년까지 동 기금을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였고 동 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2016년 이후 국

<표 28>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구조 및 수입내역별 규모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		2020		2021 계획액(B)	증감 (C=B-A)	증감률 (C/A)
	계획액	결산액	계획액(A)	집행액			
수입 계	369,192	366,965	359,403	325,449	305,658	△53,745	△15.0
자체수입	63,631	61,404	66,079	32,445	66,213	134	0.2
정부내부수입(전입금)	305,561	305,561	293,324	293,005	239,445	△53,879	△18.4
일반회계	50,000	50,000	21,000	21,000	20,370	△630	△3.0
복권기금	105,561	105,561	122,324	122,005	122,075	△249	△0.2
국민체육진흥기금	100,000	100,000	100,000	100,000	97,000	△3,000	△3.0
관광진흥개발기금	50,000	50,000	50,000	50,000	-	순감	순감
지출 계	276,731	274,095	294,282	276,889	323,999	29,717	10.1

주: 2020년도 집행액은 2020년 10월말(10.26) 현재 집행(세입)액 기준임.

출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0).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검토보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금은 '19년 1,604억원까지 증가하였으나 '20년 전망치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표 29> 참고), '21년 예산안에서도 재정수지 적자가 전망되어 이후 적립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표 29>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단위: 억원)

구분	'17	'18	'19	'20(전망)	'21(전망)
수입(A)	1,967	2,863	3,670	3,594	3,057
지출(B)	2,295	2,412	2,741	3,417	3,240
재정수지(A-B)	△328	451	929	177	△183
기말적립금	545	920	1,604	1,781	1,598

출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0).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검토보고」

이에 동 기금은 자체수입, 타기금 전입 등 다양한 수입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체수입 재원을 단기적으로 마련하기는 어렵고, 타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김우철 외(2020)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입금의 일부 전입을 통해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추가 전입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사행성 사업으로 인한 외부불경제를 문화예술 사업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방안을 더 심층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민체육진흥기금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편성되기 시작하면서 기금고갈의 문제가 완화되었다.

8) 지역신문발전기금(문화체육관광부)

① 일반회계 전입금 현황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사를 대상으로 경영여건 및 유통구조 개선, 경쟁력 강화 및 공익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¹²⁾ 일반회계 전입금은 2021년 정부안 기준 87억원으로 전년 대비 7억원 증가하였다.

<표 30> 일반회계로부터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전입금 규모 추이

(단위: 백만원, %)

전출 내용	'17 당초예산	'18 당초예산	'19 당초예산	'20 당초예산	'21 예산안	연평균 증가율 ('17~'21)
지역신문발전기금 전출	8,222	8,000	8,000	8,000	8,700	1.42

수입구조를 살펴보면 '21년 차입금인 정부예금회수를 제외하면 88.6억원이며(<표 31> 참고) 이중 일반회계 전입금이 87억원으로 기금 재원의 대부분을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다. 해당 전입금은 '04년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이듬해인 '05년부터 편성되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 해당 법이 '22년까지 6년 연장됨에 따라 해당 전입금 또한 '22년까지 편성될 예정에 있다.

<표 31> 2019~2021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수입재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결산)	2020	2021(안)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84	160	160
기타경상이전수입	252	-	-
정부예금회수	1,871	2,288	1,100
일반회계 전입금	8,000	8,000	8,700
총계	18,187	10,448	9,96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각년도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② 전입금 규모 및 편성의 적정성 진단

2019년 기금준치평가보고서에서는 해당 기금을 언론진흥기금으로 통폐합하며 일몰기한인 2022년까지만 운영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자체수입이 거의 없으며 일반회

12) 현재 동 기금에서 기획취재 지원, 지역여론활성화지원, 조사연구·연수교육, 기사자료디지털화지원, 스마트미디어인프라지원, 소외계층구독료지원, 지역신문활용교육 지원 등 7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계 전입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전입금 재원과 목적사업 간의 연계성이 낮음에 따라 재원구조가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 기금은 기금존치평가보고서를 비롯해 언론 등에서도 기금목적의 유효성, 언론진흥기금과의 유사·중복성, 기금사업의 낮은 효과성,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에 따라 2022년까지만 존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동 기금에 대한 기존의 평가를 토대로 존속기한인 2022년까지만 동 기금을 운용하고 당해년까지만 일반회계 전입금을 편성하며 언론진흥기금과의 통폐합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9)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무부)

① 일반회계 전입금 현황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주요 재원 중 하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연도 예상 벌금수납액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벌금수납액은 일반회계 세입임에 따라 동 기금에 납입되는 벌금수납액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분류된다. 동 기금에 대한 2021년 정부안 기준 일반회계 전입금은 1,060억원이며 전년대비 236억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총 벌금수납액 중 해당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되는 비율이 '20년까지는 6%였는데, '21년부터 8%로 상향되었기 때문이다.

<표 32> 일반회계로부터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전입금 규모 추이

(단위: 백만원, %)

전출 내용	'17 당초예산	'18 당초예산	'19 당초예산	'20 당초예산	'21 예산안	연평균 증가율 ('17~'21)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전출	80,110	80,110	82,440	82,440	106,054	7.27

해당 비율이 상향된 데에는 기금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벌금 수납액(일반회계 전입금)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범죄피해자 보호 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여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2016년부터 여유자금 회수 규모가 늘어나고 여유자금 잔액이 줄어들어 벌금수납액 납입금 증대를 통해 기금 재원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결산 기준 동 기금의 여유자금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여유자금이 206억원이었지만 2018년 146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듬해 다시 47억원으로 감소하였다(<표 33> 참고). 2018~2019년 동안 여유자금으로 예치한 금액보다 회수한 금액이 140억원 가량 많아지며 2019년 여유자금은 2017년 대비 150억원 감소하였다.

<표 33> 결산기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여유자금 현황 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예산)
여유자금 운용	15,781	6,185	6,227	2,203
여유자금 회수	16,712	11,100	15,400	7,172
여유자금	20,600	14,600	4,700	-

주: 2020년 여유자금은 집계되지 않음

출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2020), 법무부 각년도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21년 정부안 기준 동 기금의 수입액 중 일반회계 전입금의 비중은 96.5%로 동 기금은 재원으로 벌금수납액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 기금의 사업비는 매년 수십억원 이상 증가하고 있어 ‘17년에는 843억원이었으나 ‘21년 정부안에서는 1,049억원에 이르고 있다(<표 34> 참고).

<표 34>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수입 구성 및 사업비 규모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안)
일반회계 전입금	94,856	80,110	80,110	82,440	82,440	106,054
변상금	223	724	1,075	1,281	1,556	1,556
기타수입	-	-	-	2,375	2,375	2,375
여유자금 회수	12,701	21,035	19,960	15,006	7,172	-
예수금(공자기금)	-	-	-	-	10,000	-
수입 합계	107,780	101,869	101,145	101,102	103,543	109,985
사업비 계	86,696	84,295	88,004	95,592	101,158	104,905

출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 임대형 민자사업(BLT) 한도액안 검토보고(부처별 I)」

② 전입금 규모 및 편성의 적정성 진단

정부는 벌금수납액의 최소 6% 이상을 해당 전입금으로 산출해야 하며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해당 비중은 상향될 수 있다. ‘20년까지 벌금수납액에 연동한 일반회계 전입금의 규모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동 기금을 통한 사업비가 매년 적잖이 늘어남에 따라 여유자금이 2017년부터 감소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1년부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되는 벌금수납액의 비율을 기존 6%에서 8%에 상향하였다¹³⁾

동 기금의 대부분의 재원을 일반회계 세입인 벌금수납액에 의존하고 있음에 따라 사업비 증가

13) 벌금수납액에 대통령령에 따른 일정 비율이 부과되는 것 이외에 가중치도 부여되어 산정된다. 2020년 예산에서 해당 전입금의 산출내역은 3년 평균 벌금수납액*0.06*1.03으로 가중치는 1.03이었는데, 2021년 산출근거는 5년평균 벌금수납액*0.08*1.03²로 변경되어 가중치도 상향되었다. 가중치는 행정부 재량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고려된다.

로 인한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전입금으로 편성되는 벌금수납액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지출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동 기금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을 동 기금에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또는 계속해서 편성해야 하는지를 엄밀히 검토함으로써 지출측면에서 구조조정을 하여 수입재원 확충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동 기금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직접적으로 범죄피해자치료 및 자립지원, 범죄피해구조금, 신변보호 강화, 성폭력피해자지원 등 직접지원 사업과 피해자지원시설 운영비, 법률 조력 지원 등의 간접지원 사업으로 구분되며, 동 기금 관리 주체인 법무부뿐만 아니라 검찰청, 경찰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도 동 기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9년 결산 기준으로 총 사업비 중 직접지원 사업비의 비중은 23.3%로 간접지원 사업비가 직접지원 사업비의 3배를 상회하고 있다(<표 35> 참고).

<표 35> 2016~2019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직접지원 및 간접지원 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사업비 합계	90,441	85,388	89,326	96,282
간접지원 사업비	71,563	66,390	68,707	73,939
직접지원 사업비	18,873	18,997	20,619	22,344
직접지원 사업비 비중	20.9	22.3	23.1	23.3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20c).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부처별 간접지원 사업비의 비중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의 해당 비중이 높은 가운데 (<표 36> 참고) 일부 간접사업은 사업목적 상 일반회계에 편성되어도 무방하니 여성가족부 및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간접지원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¹⁴⁾¹⁵⁾

<표 36> 2019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소관부처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법무부·검찰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집행액(합계)	41,416	31,214	22,500	1,153
직접지원 사업비	7,027(41.1%)	4,154(13.3%)	0	1,153(100%)
간접지원 사업비	24,389(58.9%)	27,060(86.7)	22,500(100%)	0

출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2020a). 「2019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4)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생긴 이래 동 기금에서 타 기금이나 일반회계 등으로 이관된 사업은 5개에 달하고 있으며, 제20대 국회에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6조의 기금의 용도 규정 중 제3호를 삭제하여, 여성가족부 및 보건복지부 소관의 사업 등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15) 동 기금은 관리와 운용 주체가 달라 예산의 효과성에 한계가 있고 간접적 지원 증가, 예산의 중복 등 예산의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라살림연구소(2020b)의 제안과 같이 피해자 중심의 정책 추진체계를 위해 동 기금을 폐지하고 사업을 실제로 집행하고 있는 부처의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수입측면에서는 재원확충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되는 벌금수납액 비율을 10%로 상향하려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방안 또한 고려할 수 있겠지만 다른 수입원을 통한 재원확충 방안을 또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최근 수년간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된 범죄피해 구조금 대비 변상금¹⁶⁾ 수납액 비중이 구조금의 10~15%에 불과한 가운데(<표 37> 참고), 변상금의 수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변상금 수납실적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납부의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와 구조금 지급과정에서 사전에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므로 가해자 재산에 대해 재산조회를 거쳐 미리 재산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변상금 수납률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표 37>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구조금 지급/변상금 수납액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년 8월	2021년 계획안
구조금 지급내역(A)	9,771	9,257	9,289	10,175	11,516	5,696	11,520
변상금 수납내역(B)	678	1,014	1,198	1,510	1,243	1,060	1,556
지급 구조금 대비 변상금 수납율(B/A)	6.9	11.0	12.9	14.8	10.8	18.6	13.5

출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2020b). 「2021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이외에도 범죄수익환수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는데, 김상겸·조홍중(2015)은 국내에 범죄수익을 환수에 대한 법적근거¹⁷⁾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 측면에서 문제가 없으며, 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화이트칼라 범죄와 특정직을 이용한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고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기 때문에 범죄 예방적 차원에서도 범죄수익을 완전히 환수하여 동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범죄수입환수금은 매년 1,000억원 내외 규모로 징수되고 있으며(<표 38> 참고), 이 중 일정비율을 동 기금 재원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표 38> 연도별 범죄수입환수금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7
범죄수익 환수금	937	976	841	1,106	692

출처: 굿뉴스365 기사(2018.10.4.) “2017년 범죄수익 추징금 환수율 0.42%에 그쳐”

16) 「범죄피해자 보호법」제21조제2항6에 의하면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도록 되어 있다.

17) 「공무원범죄몰수특례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등이다.

10) 응급의료기금(보건복지부)

① 일반회계 전입금 현황

응급의료기금의 주요 수입재원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과태료 및 범칙금(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기관에 징수하는 과징금(예상수입의 100분의 35)이며, 해당 재원은 일반회계 세입임에 따라 동 기금에 납입되는 상기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분류된다. 더불어 공공지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충당액 또한 동 기금의 수입재원 중 하나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에 편성되고 있으며, 해당 전입금 규모는 공자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충당액을 제외하면 과태료 및 교통범칙금과 요양기관 과징금에 연동하여 결정된다.

동 기금에 대한 2021년 정부안 기준 일반회계 전입금은 1,994억원이며 전년대비 260억원 가량 증가하였다. 해당 전입금 중 도로교통법 과태료 및 교통범칙금이 85.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과징금의 비중은 4.6%이다. 공자기금 예수금이자상환 충당액은 '18년 65억원에 불과하였으나 '21년에는 202억원이 편성되며 전년대비 100억원 가량 증가하였으며 해당 전입금에 차지하는 비중은 10.1%이다.

<표 39> 일반회계로부터의 응급의료기금 전입금 규모 추이

(단위: 백만원, %)

전출 내용	'17 당초예산	'18 당초예산	'19 당초예산	'20 당초예산	'21 예산안	연평균 증가율 ('17~'21)
응급의료기금 전출	172,718	180,856	184,433	173,386	199,430	3.66
도로교통법 과태료 및 교통범칙금	155,211	165,220	168,801	161,182	170,131	2.32
요양기관 과징금	9,177	9,132	9,028	9,145	9,145	-0.09
공자기금 예수금이자상환 충당	8,330	6,504	6,424	10,344	20,154	24.72

② 전입금 규모 및 편성의 적정성 진단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의 대부분은 도로교통법 과태료 및 교통범칙금과 요양기관 과징금으로 해당 재원의 규모는 일정한 법적 기준에 근거하여 산정되며, 동 기금 총 수입 중 예치금회수, 예수금 회수¹⁸⁾, 용자원금 회수, 기타경상이전수입을 제외한 수입원 중에서 해당 재원은 대부분을 차지하여 동 기금은 수입에 있어 해당 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표 40> 참고).

18)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용자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추경을 통해 공자기금 예수금을 대폭 증액하였다.

<표 40> 연도별 응급의료기금 수입 자원 구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추경)	2021년(안)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7,071	4,779	4,946	11,977
기타경상이전수입	8,444	8,265	8,444	8,444
용자원금회수	122,741	120,097	60,842	1,595
정부예금회수	21,068	18,961	17,065	17,065
일반회계 전입금	180,856	184,433	173,386 (180,671)	199,430
공자기금 예수금	21,189	30,000	30,071 (827,171)	69,415
총계	361,369	366,535	294,754 (1,099,139)	307,926
기금 사업비	229,176 (232,434)	232,031	236,170 (1,035,400)	246,167

출처: 보건복지부. 각년도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 과태료 및 교통범칙금에 기금 재원을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 과태료는 유효기한이 존재하는 한시적 규정이라 기금의 자원조달 구조가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도로교통법 과태료에 해당 기금의 재원으로 편성되기 시작한 2008년 이전에는 교통범칙금만으로 기금 재원을 조성하기 어려움이 있어 당시 기금운용 주체인 보건복지부는 동 기금을 폐지하고 응급의료 관련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기금폐지를 반대하는 여러 입장이 존재함에 따라 기금은 존치되었고 이후 도로교통법 과태료가 기금 재원으로 추가되고 해당 재원의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동 기금은 현재까지 존치되고 있다.

현재 응급의료 시스템의 구축 및 체계화가 중요한 정책적 이슈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응급의료 기금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수용되어 오고 있고, 기금존치평가보고서(2018)에서도 동 기금의 목적이 유효하고 자원구조가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금은 수년간은 존치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도로교통법 과태료 또한 유효기한이 존재하지만 응급의료 사업에 대한 높아진 관심으로 인해 유효기한이 계속해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 기금의 존치 타당성과 자원구조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확고하지 않다. 도로교통법 과태료가 동 기금의 재원으로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존재하며, 2016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에서는 응급의료사업을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사업으로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언급하였다.¹⁹⁾ 그리고 동 기금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사업 확장을 위해

19) 판정단은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사업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 수요가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이거나 사업 수요의 규모와 발생빈도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이지만 동 기금이 수행하는 모든

필요한 이자수입및재산수입, 도로교통법 과태료 및 교통범칙금의 재원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고 있어 공자기금 예수금(차입금)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의 필요성이 더하여져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공자기금 예수금과 해당 예수금을 상환하기 위한 이자상환 총당금은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응급의료 체계가 보다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정책환경을 고려할 때 응급의료기금은 존치되는 것이 적절하고, 기금 재원 확보를 위한 다른 방안이 강구되지 않고 있기에 현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과태료와 교통범칙금을 재원으로 총당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은 재원조달 구조를 유지하되 쉽지는 않겠지만, 정부는 동 기금의 목적에 부합한 새로운 재원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11)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산업통상자원부)

① 일반회계 전입금 현황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은 2014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기술료가 국가예산총계주의에 편입됨에 따라 2015년 신설되었으며,²⁰⁾ 동 기금으로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18년 추경부터 138억원이 편성되기 시작하여 '21년 정부안에서는 223억원이 편성되었다. 해당 전입금은 2018년부터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기술료를 감면해주는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감소하는 기술료 수입분을 보충하기 위해 편성되었으며, 기술료 감면제도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전입금 또한 동년도 까지만 편성될 예정이다.

<표 41> 일반회계로부터의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전입금 규모 추이

(단위: 백만원, %)

전출 내용	'17 당초예산	'18 당초예산 (추경)	'19 당초예산	'20 당초예산	'21 예산안	연평균 증가율 ('19~'21)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혁신계정) 전출	-	- (13,808)	23,000	23,000	22,310	-3.00

② 전입금 규모 및 편성의 적정성 진단

해당 기금의 주요 수입재원은 기술료로 2021년 정부안 기준 정부예금회수(466억원), 예탁원금회수(120억원), 예수금(879억원) 등을 제외한 수입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표 42> 참고).

세부사업들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0) 산업기술 분야 연구개발, 사업화, 기반조성, 문화조성 등 산업기술 진흥을 위한 기술료의 재투자와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의무 및 2차 규제물질 감축 이행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표 42>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수입구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결산)	2020(당초)	2021(안)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1,331	1,004	1,108
기타경상이전수입	91,909	86,532	92,465
용자원금회수	1,223	2396	2,396
정부예금회수	88,735	66,230	46,617
일반회계 전입금	23,000	23,000	22,310
예탁원금회수		12,000	12,000
예수금		28,800	87,923
예탁이자수입	104	375	344
총계	203,312	220,337	265,163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도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기술료 수입액은 2016년 1,329억원까지 이르렀으나 2016년 기술료율이 인하되면서 이듬해 989 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조치가 시행된 2018년 1,295억원으로 증가하였지만 이듬해 다시 909억원으로 감소하였다. 2018년 이후 기술료 수입 결산액 및 예산액이 2016년 이전처럼 1,000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데에는 기술료율 인하 및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조치가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43> 결산 기준 연도별 기술료 수입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예산)	2021 (예산)
기술료 수입액	138,615	132,895	98,890	119,534	90,938	85,382	91,385

출처: 국회 산업통상위원회(2020). 「2019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이 종료되는 2023년 이후 기술료 수입액은 이전보다 더 늘어나겠지만 이전에 편성된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만큼 늘어날지는 불확실하며, 청년실업 문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기술료 감면조치가 연장될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다.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조치는 성과가 크지 않는 이상 2022년 이후에는 일몰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이 더 이상 편성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술료 수입 증대 또는 타 재원을 발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2)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중소벤처기업부)

① 일반회계 전입금 현황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은 경상, 자본지출 사업 수행에 따른 지출대비 수입 부족분 및 용자사업 수행에 따른 이차보전소요액, 기금관리비 등에 대한 비용을 정부출연금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해당 전입금은 '21년 정부안에서 1조 5,656억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3,500억 원 가량 증가하였으며, '20년에 전년대비 4,500억원 늘어나며 '20년부터 급증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해당 전입금은 매년 추경을 통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17~'18년에는 추경을 통해 해당 전입금이 대폭 증액되었다.

<표 44> 일반회계로부터의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전입금 규모 추이

(단위: 백만원, %)

전출 내용	'17 당초예산 (추경)	'18 당초예산 (추경)	'19 당초예산 (추경)	'20 당초예산 (추경)	'21 예산안	연평균 증가율 ('19~'21)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전출	492,805 (1,301,301)	685,823 (993,687)	776,013 (827,038)	1,217,250 (1,417,813)	1,565,561	33.51

동 기금의 총 수입의 대부분은 용자원금회수와 기타민간차입금이며, 해당 재원을 제외한 수입원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표 45> 참고).

<표 45>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수입구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결산)	2020(당초예산)	2021(안)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320,246	318,462	294,662
기타경상이전수입	24,870	32,222	30,784
잡수입	8,648	10,018	10,018
용자원금회수	3,154,719	3,392,518	3,223,300
기타민간차입금	4,267,537	4,590,000	5,761,000
정부예금회수	5,914	17,969	-
일반회계 전입금	827,038	1,217,250	1,565,561
기금(복권기금) 전입금	54,450	55,590	63,711
총계	8,663,422	9,634,029	10,949,036

출처: 중소기업벤처기업부. 「2021년도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② 전입금 규모 및 편성의 적정성 진단

‘21년 정부안에서 동 기금에 편성된 사업비 7조 1,931억원 중 용자사업비가 5조 6,900원으로 동 기금에서 사업비 중 용자사업비의 비중이 높음에 따라 동 기금의 수입원에서 용자원금회수액 과 용자사업 추진을 위한 기타민간차입금이 비중이 높다. 그러나 용자사업이 아닌 재정지출 사업 비 및 기금운영비가 1조 6,200억원 가량에 이르는 가운데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기타경상이 전수입, 기금 전입금만으로 해당 사업비 및 운영비에 대한 재원을 마련할 수 없어 일반회계 전입금이 상당규모 투입되고 있으며, 해당 전입금의 규모는 매년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동 기금은 원금회수, 차입금이 아닌 기금에 귀속되는 자체수입원이 충분하지 않고 다른 수입재원의 발굴이 여의치 않아 사업수행비 및 기금운영비의 부족분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함이 불가피하지만, 해당 전입금이 최근 수년 동안 급증하는 추이는 기금의 운용에 있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다.

동 기금의 새로운 수입재원을 발굴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가운데 지출측면에서의 구조조정을 통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동 기금에서 차입금이자상환을 제외하고 가장 큰 예산규모로 수행하는 사업은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와 ‘창업성공패키지’이며, 두 사업의 예산은 최근 2~3년 전부터 크게 늘어났다(<표 46> 참고).

<표 46>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및 창업성공패키지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 (추경)	2018년 (추경)	2019년 (추경)	2020년 (추경)	2021년(안)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30,000 (830,000)	200,000 (450,000)	240,000 (290,000)	740,000 (940,000)	840,000
창업성공패키지	50,000	54,000 (102230)	92,222	104,117 (103,783)	104,117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각년도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는 사업 목적상 동 기금에 편성됨이 타당하지만 동 기금을 통해 출자한 모태펀드의 수익 및 성과를 엄밀히 분석하여 성과가 높지 않을 경우 사업비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창업성공패키지 또한 사업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비를 책정해야 하며, 기금에 편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이관함도 검토할 수 있다.

더불어 연수사업(‘21년 260억원) 및 연수원건립 사업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13)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중소벤처기업부)

① 일반회계 전입금 현황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경상지출 등 사업 수행에 따른 사업비와 기금운영비 등에 대한 비용을 정부출연금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해당 전입금은 직전 회계연도 관세징수액의 100분의 3을 기준으로 편성된다.²¹⁾ 해당 전입금은 '21년 예산안에서 1조 3,450억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5,000억원 가량 증액되었으며, 해당 전입금은 매년 증가하면서 최근 5년 동안의 연평균증가율은 25.3%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해당 전입금은 매년 추경으로 증액되고 있으며, '20년의 경우 해당 전입금이 당초예산 대비 추경에서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지원사업 확대에 비롯된 것이다.

<표 47> 일반회계로부터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전입금 규모 추이

(단위: 백만원, %)

전출 내용	'17 당초예산 (추경)	'18 당초예산 (추경)	'19 당초예산 (추경)	'20 당초예산 (추경)	'21 예산안	연평균 증가율 ('17~'21)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전출	545,720 (593,699)	564,874 (607,223)	760,246 (824,883)	826,348 (1,750,933)	1,344,994	25.30

동 기금의 총 수입의 대부분은 용자원금회수와 예수금,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용자원금회수와 예수금을 제외한 수입원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표 48> 참고).

<표 48>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수입구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결산)	2020 (추경)	2021(안)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116,228	170,602	187,992
기타경상이전수입	9,433	6,825	8,730
용자원금회수	1,365,265	1,766,676	1,939,382
정부예금회수	11,465	-	345,615
일반회계 전입금	824,883	826,348 (1,690,633)	1,344,994
공자기금 예수금	1,026,000	538,255 (2,811,174)	1,675,533
총계	3,353,274	3,308,706 (6,445,910)	5,502,246

출처: 중소기업부. 「2021년도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21) 이것은 관세징수액 중 일부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함이 아니고, 관세징수액의 3/100에 해당하는 액수를 기준으로 해당 전입금을 편성한다는 의미이다. 관세징수액의 3/100은 편성 기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준에 해당하는 액수로 편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액수를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수준으로도 편성할 수 있다.

② 전입금 규모 및 편성의 적정성 진단

동 기금의 주요 사업은 용자사업으로 '21년 정부안 기준 총 사업비 4조 6,271억원 중에서 용자사업비는 3조 6,000억원이 편성되었다. 주요 사업이 용자사업인 만큼 동 기금의 주요 수입원은 용자원금회수와 용자이자수입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입 중 일반회계 전입금 및 공자기금 예수금의 규모가 상당함에 따라 용자를 포함한 사업비와 기금운영비('21년 502억원)에 대한 지출을 상기 재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해당 재원에 대한 의존은 더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반회계 전입금과 공자기금 예수금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는 데에는 용자 외 사업비가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용자원금회수대상액 중 미수납액의 비중 및 규모가 높음에 따라 용자원금회수액이 충분하지 않음이 적잖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9년 결산 기준 기타민간용자원금회수액의 미수납률은 41.9%, 미수납액은 2,194억원에 이르며 용자원금회수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49> 참고).

<표 49> 2017~2019년 결산 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용자원금회수대상액 중 미수납액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수납률(B/A)	미수납액
2017	92,633	88,147	2,249	47.9	45,898
2018	187,735	248,806	168,586	67.8	80,220
2019	349,546	523,414	303,952	58.1	219,461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20d).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2018년 기금준치보고서에도 이 같이 일반회계 전입금과 공자기금 차입금 등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용자원금회수 미수납율이 높음에 따라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지속적으로 동 기금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100% 미만으로 감소하며 재무건전성이 아주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면서 재원구조의 적정성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평가결과를 도출하였다. <표 50>과 같이 타 기금의 순자산과 비교하였을 때 동 기금의 재무건전성은 열악한 상태이다.

<표 50> 2018~2019년 소진기금, 중진기금, 기술보증기금 순자산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소진기금			중진기금			기술보증기금		
	자산	부채	순자산	자산	부채	순자산	자산	부채	순자산
2018	65,101	64,937	164	181,145	154,653	26,492	29,422	12,661	16,761
2019	74,395	75,236	-841	190,728	163,328	27,400	29,535	12,784	16,751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20d).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액도 2017년 860억원이 지출되었지만 매년 증가하여 2021년 정부안에서는 2,249억원의 지출안이 편성되었다(<표 51> 참고).

<표 51> 연도별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 (추경)	2018년 (추경)	2019년 (추경)	2020년 (추경)	2021년(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액	84,017 (86,017)	130,197 (123,690)	153,338 (155,477)	162,406 (185,325)	224,917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각년도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동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늘리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지만 최근 수년동안 해당 전입금이 급증하고 있고 기금 운영의 원칙을 고려할 때 해당 전입금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기금운영·관리 및 사업비의 일부 총당하는 수준으로 규모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해당 전입금이 급증하는 데에는 용자원금회수대상액 증 미수납액의 규모가 큰 것이 적잖이 작용하고 있어 현재 상승하고 있는 소상공인 용자사업의 부실율을 낮추는 방안 등에 대한 모색이 수입 측면에서 요구된다. 더불어 복권전입금을 동 기금의 수입으로 편입하는 방안 등 타 수입재원을 새롭게 발굴할 필요도 있다. 지출 측면에서는 용자사업을 비롯해 동 기금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시 사업규모를 축소·조정 해나가야 할 것이다.

14) 남북협력기금(통일부)

① 일반회계 전입금 현황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협력기금법」 제4조에 근거하여 경수로 관련 공자기금 이자상환 및 기금사업비의 총당을 위해 정부출연금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을 편성하고 있다. '21년 정부안에서 해당 전입금은 전년대비 500억원 감소한 1,00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최근 5년간 해당 전입금 규모를 살펴보면 1,000억원을 넘는 수준에서 편성되고 있다.

<표 52> 일반회계로부터의 남북협력기금 전입금 규모 추이

(단위: 백만원, %)

전출 내용	'17 당초예산	'18 당초예산	'19 당초예산	'20 당초예산	'21 예산안	연평균 증가율 ('17~'21)
남북협력기금 전출	220,000	80,000	100,000	150,000	100,000	-17.89

동 기금의 총 수입의 대부분은 '20년부터는 공자기금 예수금으로 나타나며 해당 예수금, 용자원 금회수와 정부예금회수를 제외한 수입원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53> 참고).

<표 53> 남북협력기금 수입구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안)
관유물대여료	69	39	39	39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17,995	14,009	13,771	28,757
기타경상이전수입	62,928	44,130	47,519	48,528
잡수입	2,133	3,447	4,561	3,904
용자원금회수	53,084	36,041	62,143	73,099
정부예금회수	231,200	139,532	80,103	47,239
일반회계 전입금	80,000	100,000	150,000	100,000
공자기금 예수금	1,170,863	1,153,100	1,544,626	1,371,779
총계	1,618,142	1,490,298	1,902,762	1,673,345

출처: 통일부. 각년도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② 전입금 규모 및 편성의 적정성 진단

'21년 정부안 기준 동 기금에 편성된 사업비는 용자사업(2,520억원)을 포함한 1조 2,500억원 가 량이다(<표 54> 참고). 용자사업비는 차입금을 재원으로 수행할 수 있지만, 기금에서 용자가 아닌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재원은 법정부담금, 재산 및 이자수입 등 동 기금에 귀속되는 안정적인 수입원을 통해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용자사업을 제외한 사업비가 1조원에 이르는 가운데 해당 사업비에 상응하는 상기 재원의 규모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하여 2,000억원에 미치지 않는다.

<표 54> 남북협력기금 지출구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안)
	예산	결산		
통일정책	6,341	7,020	4,125	3,750
남북사회문화교류	20,530	3,684	22,364	21,341
인도적 문제해결	572,345	35,837	620,921	653,019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504,367	28,483	555,581	562,704
남북협력기금운영비	2,739	2,344	2,643	2,509
기금간거래	303,873	261,013	647,507	325,229
여유자금운용	80,103	62,407	49,621	104,793
총계	1,490,298	400,789	1,902,762	1,673,345

출처: 통일부. 각년도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2017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에서도 공가지금 예수금 및 정부출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원구조가 부적정하다는 평가결과를 도출하였으며²²⁾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경우 기금 사업의 확대가 예상되기에 기금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자체수입원 개발을 조속히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기금 사업비가 이전 정부에 비해 늘어난 가운데 상기와 같은 기금 재원구조로 인해 동 기금의 여유자금 규모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동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규모는 2008년 1조 357억원에 이르렀으나 계속해서 감소하여 2019년 결산 기준 624억원까지 감소하였다(<표 55> 참고). 2018~2019년 대외적 환경으로 인해 기금 사업비의 집행율이 20% 미만을 보여 실제 지출규모가 크지 않았던 것이 그나마 여유자금 잠식과 공자기금 예수금의 급증을 잠시 보류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55> 결산 기준 2016~2019년 남북협력기금 여유자금 운용 규모 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남북협력기금 여유자금 규모	724,242	230,409	278,879	84,567	62,408

출처: 통일부. 각년도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그러나 동 기업의 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차질없이 집행될 경우에는 자체수입원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해당 사업비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의 증액을 통해 상당부분 해당 전입금으로 충당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기금 운영의 원칙을 고려하면 일반회계 전입금을 계속해서 증대해나감은 바람직하지 않다.

향후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남북협력 관련 사업의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와 같은 재원구조를 유지한다면 동 기금의 재정안정성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 수입측면에서는 통일과 관련된 목적세 및 부담금을 통한 타 재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지출측면에서는 대북인도적 지원 사업 중 일부 사업들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일반회계 전입금 중 일부는 경수로 관련 공자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액²³⁾으로 지출목적이 지정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해당 목적으로 500~600억원 수준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2) 「2020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에서는 동 기금의 재원구조의 적정성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평가결과를 도출하였다.

23) 해당 공자기금 예수금은 1999년부터 대북 경수로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다. 당초 대북 경수로사업의 사업실시기관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앞 대출금은 1조 3,744억원(11억 5,000만 달러)으로, 경수로 사업 중단 이후 공자기금 차입금(1조 3,744억원)을 상환하기 위해 공자기금을 재차입하는 방식으로 차환하였다. 이 과정에서 발생 이자가 원금이 됨에 따라 공자기금 차입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12월말 기준 차입금 잔액은 2조 2,995억원이며<표 56> 참고, 2012년부터는 발생 이자를 정부출연을 통해 상환함에 따라, 공자기금 차입금 규모는 2조 2,995억원으로 유지되고 있다(대한민국 국회 상임위 예산, 2018).

이 책정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2018)의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지적한 바대로 현재와 같이 공자기금 예수금을 재차입하여 공자기금 예수 원금을 상환하고 정부출연금으로 공자기금 예수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은 공자기금 차입 원금 규모는 유지되고 이자상환액을 매년 불필요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회계 재원 및 남북협력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향후 개선이 요구된다.

<표 56> 경수로 관련 남북협력기금 공자기금 예수금 현황

(단위: 억원)

연 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10	
차입	1,475	810	8,750	1,044	4,000	5,300	2,286	905	2,070	7,650	784	
상 환	원금	500	100	7,700	-	4,000	5,300	2,286	905	2,070	7,650	784
	이자	963	1,002	1,048	1,051	1,126	1,054	932	931	912	820	450
	소계	1,463	1,102	8,748	1,051	5,126	6,354	3,218	1,836	2,982	8,470	1,234
잔액	20,191	20,901	21,951	22,995	22,995	22,995	22,995	22,995	22,995	22,995	22,995	

출처: 국회 외교통상위원회(2018). 「2019년도 통일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통일부는 정부출연금을 통해 10년간 매년 3,000억원씩 공자기금 원리금을 상환하여 차입금을 전액 상환하는 중장기 균등분할 상환방식을 검토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정부 재정의 건전성 유지와 대북청구권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문제 등으로 정부출연금을 통한 경수로 원금 상환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원운용의 비효율을 야기하는 현재의 상환방식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현 시점에서 보다 의지를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경수로 청산 비용에 대한 문제를 명확히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정리 및 결어

직역연금 기금 및 계정성 기금을 제외한 14개 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의 편성 및 산출근거를 살펴본 결과, 각 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의 편성 재원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주로 기획재정부 및 기금 소관부처가 매년 일반회계에서 각 기금에 전입되는 액수를 조정·결정하는 방식을 통해 해당 전입금이 편성되고 있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과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응급의료기금에서의 전입금은 법정부담금으로써 해당 전입금의 재원이 되는 수입원 규모에 비례하여 전입금의 규모가 결정되고 있다. 후자와 같은 전입금의 경우는 그 규모가 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기술적 공식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정책환경에 따라 전입금의 규모

나 증감할 수 없으나 전자와 같은 경우에는 정책환경에 따른 정부의 판단 및 예산편성에 따라 전입금의 규모가 증감할 수 있다.

예산과 독립적인 수입구조가 기금의 설치 및 존치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공익 유지를 위한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법정부담금이 아닌 일반회계 전입금의 규모를 증액하거나 새로이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같은 기금운용의 원칙을 가지고 분석 대상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의 규모 및 편성에 대한 적정성을 진단한 결과, 법정부담금으로써 해당 전입금이 편성되는 기금을 배제한 기금들의 대부분은 해당 전입금들의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그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최근 일반회계 전입금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사업비의 재원을 해당 전입금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소관부처들은 해당 기금에서의 일반회계 전입금의 편성액을 줄여나가도록 재원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더 힘써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전입금의 규모가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지 않거나 정책환경에 따라 전입금의 규모가 증감되지 않는 기금이더라도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입금의 규모가 증가할 수 있고,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책정될 수 있는 전입금이 새롭게 편성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 지출이 늘고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도 재원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기금의 재원구조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지출측면과 수입측면에서 방안이 존재한다. 지출측면에서는 기금에서 수행하는 사업들 중 성과나 타당성이 낮은 사업들을 축소 또는 폐지 등을 통해 정리하거나 일반회계에서 수행해도 무방한 사업들을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기금에 편성된 사업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 기금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할 경우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부처의 일반회계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부처는 일반회계 예산이 증액되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일반회계 예산 증액 원활히 되지 않을 경우 기존 일반회계 사업의 조정을 통해 기금에서 이관되는 사업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수입측면에서는 법정부담금 등 새로운 재원 발굴, 이자 및 재산수입 증대를 통한 재원확충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나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와 소관부처들은 각 기금의 새로운 수입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현 시대의 흐름과 공익 증진 목적에 부합하는 각각의 목적세를 구상·발굴하는데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각 측면의 현실성을 고려할 때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 관리를 위한 수입측면의 개선은 장기적으로 추진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지출측면에서 조정을 해 나감이 적절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회예산정책처(2017a).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정무위원회」
- 국회예산정책처(2019a). 「2018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 국회예산정책처(2019b).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 국회예산정책처(2020a). 「2020 대한민국 재정」
- 국회예산정책처(2020b).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재정소요 추계
”. 「NABO_추계&세제_이슈」 제12호
- 국회예산정책처(2020c).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 국회예산정책처(2020d).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국회예산정책처(2020e).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 국회예산정책처(2020f).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2020). 「2021년 예산안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0).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검토보고」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2020a). 「2019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2020b). 「2021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 국회 산업통상위원회(2020). 「2019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 「2019년도 예산안 및 기운용계획안, 2019년 임대형 민자사업(BLT) 한도액안 검토보고(부처별Ⅳ)」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 「2021년도 예산안 및 기운용계획안, 2019년 임대형 민자사업(BLT) 한도액안 검토보고(부처별Ⅰ)」
- 국회 외교통상위원회(2018). 「2019년도 통일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기획재정부. 각년도 「기금존치평가보고서」
- 김상겸·조홍종(2015).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자원 다양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재정학회
- 김우철 외(2020). 「문화예술진흥기금 신규재원 마련 방안 연구」 한국재정학회
- 나라살림연구소(2020a). “재정개혁을 통해 국채발행 없이 재난구호금 마련방안”. 나라살림

브리핑 제34호

나라살림연구소(2020b). “성평등 예산 1,780억, 2020년 예산의 0.036%에 불과”. 나라살림

브리핑 제67호

각 부처. 2020년 및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굿뉴스365 기사(2018.10.4.) “2017년 범죄수익 추징금 환수율 0.42%에 그쳐”

월간 안전정보(2020년 6월호). “경사노위, ‘과로사 방지 종합대책’ 추진 합의”

한겨레 기사(2016.9.4.). “출산급여·육아휴직급여 급증하는데 예산은 어디서?”

매일노동뉴스 기사(2020.4.28.). “노사정 ‘과로사·장시간 노동 예방’ 첫 단추 꿰었다”

기획재정부 열림재정(www.openfiscaldata.go.kr/)